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초 타당성 연구보고서

연구책임 : 장길섭

연 구 진 : 하승수, 강국주, 김시용, 신은미, 이재혁

1. 국내외 기존 연구와 사례

가. 기본소득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라고도 불리며, 생존소득, 시민소득, 사회소득, 사회배당, 보편소득같은 이름들도 사용된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건없이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매우 폭넓다. 토마스 폐인, 베트런드 러셀, 마틴 루터 킹, 앙드레 고르같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해 왔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흔히 거론되는 사람들은, 제임스 미드(James Mead e),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제임스 토빈(James Tobin) 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끈 판 빠레이스(Van Parijs)같은 사람도 많이 얘기된다.

이런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좌파부터 우파, 그리고 생태주의자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다.

○ 기본소득의 사상적 뿌리는 다양하다.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은 공유사상이다. 공유재(common assets)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최초로 뚜렷하게 밝힌 사람으로 토머스 페인이 있다. 토머스 페인은 1797년에 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라는 책을 통해 이런 생각을 밝힌다.

이 책에서 토마스 페인은 시민배당을 주장한다. 토마스 페인은 두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자연재산(natural property)이다. 이것은 땅, 공기, 물처럼 우주의 창조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다. 사람의 노동으로 지은 건물이나 만든 물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토마스 페인은 자연재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은 세금으로 걷어 시민들에게 배당금을 주자는 제안을 한다.

구체적으로 토마스 페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재원을 마련해서 50세 이상의 사람에게 매년 10파운드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21세에 달한 사람에게는 일시금으로 15파운드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에게 ‘종잣돈’을 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수준이 23파운드였으므로 10파운드, 15파운드는 꽤 큰 돈이었다.

비록 토마스 폐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민배당을 지급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유’에 기반한 시민배당이라는 생각을 남겼다. 그리고 이 생각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기본소득은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 킹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는 1960년대 미국 남부에서 벌어진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고, 그 결과 버스나 식당, 학교에서 이뤄지던 일상적인 흑백차별이 곁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교묘한 방법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던 장벽도 사라져, 많은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미국에 사는 흑인들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흑인들은 가난했고, 일자리가 없었으며, 주택,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폭동들을 겪으면서,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의 절망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196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30명 이상이 사망하는 폭동이 발생했을 때, 그는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깊은 절망감이 폭동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흑인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주택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쟁에는 막대한 돈을 쓰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했다.

마틴 루터 킹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는 1967년에

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혼란인가 공동체인가?>라는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본소득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968년 암살당하기 직전에 빈자들의 행진(Poor People's Campaign)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행진에서 요구하려고 했던 3가지 핵심은 기본소득, 완전고용, 쌈 임대주택이었다.

토마스 폐인이나 마틴 루터킹은 불평등한 현실을 보면서 일찍부터 기본소득(시민배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다.

○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는 기본소득없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지식인인 앙드레 고르는 1978년에 쓴 <실업의 황금시대>라는 글을 통해 ‘공장의 자동기계로 인해 공장의 노동자수는 30퍼센트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로 인해) 사무직과 서비스직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다’¹⁾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그의 얘기는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앙드레 고르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근본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곳도 등장한다. 1982년부터 모든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바로 그곳이다.

1) 앙드레 고르 지음, 이현웅 옮김,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생각의 나무, 2013, 219-221쪽

미국 알래스카주는 미국에서 가장 늦게 주로 승격한 곳이다. 본래 가난한 곳이었는데 1960년대에 석유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인구가 늘고 주정부의 재정수입도 급속하게 증가했다. 석유를 채굴하는 석유회사가 일종의 사용료(lease and royalty)를 주정부에 내기 때문이었다.

1974년 주지사가 된 해먼드는 이 돈을 그냥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영구기금'(Permanent Fund)이라는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주민투표로 채택이 되었다. 석유에서 나오는 주정부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기로 한 것이다. 1976년에는 알래스카주의 헌법을 개정해서 영구기금 설치를 헌법에 명시했다. 영구기금이라고 한 이유는 석유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유가 고갈된 뒤 살아갈 세대를 위해 돈을 적립해놓겠다는 의미다.

이 기금 자체를 주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운용수익)을 매년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다. 원금은 안 건드리는 것이다.

기금의 운용은 알래스카 영구기금 법인(Alaska Permanent Fund Corporation)이 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규모는 421억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이다. 땅속에 있는 석유는 본래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땅 속에서 생성되어 묻혀진 석유는 공유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땅속에서 뽑아내는 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 간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공동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 일부를 주정부가 환수하여 기금을 만들고, 주민 모두에게 기금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금의 액수는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한다. 운용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기 때문이다. 5년간의 평균수익을 계산해서 그 절반 정도를 매년 지급하는데, 가장 많이 지급한 2008년에는 1인당 3,269달러를 지급했다(그중에 1,200달러는 특별지급 명목이었다). 2014년에는 1,884달러를 지급했다. 물론 이 금액이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주민이면 누구나 정당한 권리로 받는 돈이다. 시민배당인 것이다.

<그림1> 2005년 이후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금 액수 (단위 : 달러)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액수	845.7 6	1,106.9 6	1,654	3,269	1,305	1,281	1,174	878	900	1,884

○ 최근에는 알래스카주의 사례를 보편화하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개리 플로멘호프트(Gary Flomenhoft)는 특별한 지하자원이 없는 베몬트주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시민배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작게는 연간 1,972달러, 많게는 연간 10,348달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²⁾.

그의 연구에서는 물, 깨끗한 공기, 광물, 숲, 물고기와 야생동물, 토지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인터넷, 방송주파수처럼 사회 전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공유재로 보았다. 이

2) Flomenhoft, Gary. "Applying the Alaska model in a Resource-Poor State : The Example of Vermont", *Exporting The Alaska Model - Adapting the Permanent Fund Dividend for Reform around the World*. Ed. Karl Widerquist and Michael W. Howar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104-105

런 인위적 공유재도 사회 공통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방송주파수가 처음부터 특정한 기업의 소유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런 공유재를 사유화(私有化)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환수하여 배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 한편 미국 알래스카주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탄소세를 걷어서 탄소배당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탄소세를 걷어서 모든 주민들에게 연 100달러의 탄소배당금을 배분하고 있다.

○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상원의원인 수풀라시가 발의한 ‘시민기본소득법’은 2002년 상원과 2003년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0년이 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편 2013년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국민발의가 성립되어 주목을 끌었다. 12만 6천명의 국민이 서명을 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만, 설사 당장 채택되지 않더라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은 계속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고 논의된 적은 여러차례 있었다.

국가 차원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 나미비아, 인도 등에서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

급한 실험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고, 우려했던 부작용(일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 농촌주민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주민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간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농가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귀농가구나 소농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자급률이 22%대로 낮은 상황에서 고령화까지 진행되어 국내 농업의 기반은 매우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도 귀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잠재적인 가능성에 비해 실제로 귀농을 하는 가구는 많지 않다. 현재의 실태를 보면 귀농에 비해 귀촌이 많은 실정이다.
- 2014년 3월 20일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귀농가구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줄어들었다. 귀촌까지 포함하면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귀농’은 줄어든 것이다. ‘귀농’은 주소가 동(洞)지역에서 읍.면(邑面)지역으로 바뀐 사람 중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다고 확인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같은 명부에 신규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런 귀농가구는 2013년에 10,923가구(18,825명)로 2012년의 11,220가구에 비해 약간 줄었다. 귀농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약간 감소한 것은 귀농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을 했다

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귀농가구의 평균 전입가구원수가 1.72명이라는 것이다. ‘나홀로 귀농’이 많은 것이다. 실제로 1인가구로 전입하는 비율이 전체 귀농가구의 57.8%에 달한다. 가족들은 도시에 두고 홀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당장 현금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귀농’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귀농이 올릴 수 있는 지역사회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귀농을 결정하는 연령대가 언제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2013년의 귀농가구주 평균연령은 53.1세였다. 가장 많은 연령대는 역시 50대로 39.3%였고, 40대도 23.0%에 달했다. 반면에 30대 이하는 11.5%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청년귀농은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도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귀농가구의 경제적 기반은 매우 열악하다. 통계에 따르면, 귀농을 한 가구의 평균 작물재배면적은 0.46ha 정도이다. 규모별로 봤을 때에 0.5ha 미만인 경우가 72.2%에 달한다.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처음 귀농해서 농사일이 익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소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수입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귀농가구가 연 소득 1,000만원을 넘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귀농가구중에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자경 가구는 55.7%이고, 다른 사람 소유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임차농이 44.3%를 차지한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빌린 임차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순소득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귀농연령대가 높고, 청년귀농은 어려운 것이다. 청년들이 낮은 수입을 감수하면서 귀농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자녀를 키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귀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홀로 귀농’이 많을 수밖에 없다.

○ 그렇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등을 감안할 때에는, 귀농해서 친환경적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공동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귀농했을 때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다. 이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풀기가 어렵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에 ‘농민에게 월급을 주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변현단은 ‘효과도 불명확한 농업정책 예산과 국가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20세 이상 모든 농민들에게 매달 월급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2014년의 농축산식품 예산 13조 5,344억 원을 300만 농민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451만 원, 매월 37만 6,000원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³⁾.

구체적으로는, 2014년 농축산식품 예산이 13조 5,344억 원, 지자체의 정책 자금 및 농어촌 대책 자금, 일자리 창출 비용, 친환경 생명산업 집중 투자 비용 등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처럼 농민들에게 월급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은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물론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고 넘어서야

3) 한겨레신문 2014. 3. 17.자

할 쟁점들도 많다. 그러나 만약 이런 제안이 현실로 된다면, 귀농이 대폭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민들도 농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현금이 상당수준에 달한다. 스위스는 국토면적이 좁지만 식량자급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정부가 많은 현금을 농가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스위스 농가 소득의 60%가 정부로부터 받는 직불금이다⁴⁾.

그러나 국내 직불금의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되고, 임차농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불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서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현금을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일정액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추수기에 상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가 도입한 ‘농민월급제’는 실제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농가에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해, 추수기에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영농자금, 생활자금을 빌리면서 부담하는 대출이 자를 절감할 수 있고, 매월 돈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4) 한겨레신문 2013. 9. 17.자

그러나 이런 제도가 본래적 의미의 농민월급제나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일종의 무이자 대출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농민소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좀더 나아가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편 농민기본소득 보장이 아니라 농촌주민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농민’의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이 기준이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항상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왜 9백 제곱미터는 해당 안 되고 1천 제곱미터는 해당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그래서 농사를 짓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농촌주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위와 같은 국내외의 논의를 바탕으로 충남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주민기본소득 도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3. 농가소득 및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조사·분석

가. 조사방법

○ 충남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7명(중.소농을 선정했다)과 귀농인 7명 도합 14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했다(설문지는 별첨1로 첨부). 자신의 소득과 지출실태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농민들의 정서 때문에 설문대상을 더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나. 설문결과

○ 설문결과는 별첨2로 첨부한다.

다. 설문결과가 주는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는 농촌주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1년 농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지 못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기 때문에 적자를 보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민 7가

구 모두가 빚이 많거나 적자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은 농가소득 보장에 큰 기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농업소득 금액이 원주민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의 부족은 비농업소득으로 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가구의 경우에도 정부의 직불금 제도는 소득보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촌주민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생태위기의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귀농, 귀촌은 대도시로부터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그리고 닥쳐올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를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처럼 인구가 대도시에 몰린 상황에서는 에너지 문제, 먹거리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도시는 외부에 에너지와 먹거리를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귀농이나 귀촌이 쉽지 않다. 특히 축산이나 시설 농업(비닐하우스같은)을 하지 않고 농촌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귀농가구만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면 농사를 지어온 원주민들의 경우에도 소득의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소농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농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중·소농들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농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주민기본소득의 도입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만약 매월 일정액의 현금수입이 보장된다면 귀촌, 귀농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청년들의 귀농, 귀촌도 활발해질 것이다.

○ 농민기본소득이냐 농촌주민기본소득이냐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귀농가구의 실태를 보면, 많은 면적을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농촌이 활성화되려면 농민만 필요한 것도 아니다. 농촌에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청년들은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기가 쉬워질 것이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 보다는 농촌주민기본소득이 도입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

○ 농촌주민 기본소득은 가장 확실한 농촌살리기 정책이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축산, 시설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은 크게 다가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현금수입이 연 1천만원도 안되는 소농들도 있다. 특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가족의 노동력에 의지해 농사를 짓는 소농들에게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지급되어 귀농인구가 늘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소농들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앙드레 고르는 프랑스에서 유기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사를 전업적으로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5배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다.

○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민’의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농촌주민기본소득은 그런 기술적 문제점은 완화될 수 있느냐. 이 때 ‘농촌’의 기준은 면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다만 면이라고 해도 도시화가 된 지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별첨1>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초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농촌주민 기본소득”이란 “소득의 유무, 노동의사의 유무와 상관없이 농촌주민이 기반 하면 개인당 월간 생계비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기본 사항

- 1) 이름(나이)/성별 및 거주지
- 2)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3)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연도

2. 소득의 내용

- 1) 연간 농업 소득 금액 및 영농 규모(논/밭)
- 2) 연간 비농업 소득 금액 및 주요 수입원
- 3) 정부지원금 및 기타 소득

3. 지출의 내용

- 1) 연간 생활비

2) 연간 교육비

3) 연간 의료비

4) 연간 영농비

5) 기타

4. 최근 5년 간 순소득 및 순자산 변동추이 분석

5. 정부의 각종 직불금에 대한 농가소득 기여도 조사

6. 소득과 지출에 대한 만족도 분석

7. 기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금액은 매달 얼마였으면 하며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부

8. 사례 마을 내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구의 소득활동 조사

- 마을 내 경제활동 가능 연령인구의 유형별 소득활동 분석

- 농가 유형별 소득활동 분석: 친환경농가, 일반농가, 귀농농가 등

<별첨2>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기초 타당성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I. 원주민으로 분류할 수 있는 7명에 대한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기본 사항

1) 이름(나이/성별) 및 거주지

- ① 홍00 69세 남
- ② 송00 67세 남
- ③ 심00 69세 남
- ④ 이00 58세 남
- ⑤ 홍00 78세 남
- ⑥ 심00 62세 남
- ⑦ 배00 71세 남

2)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① 3인(부부와 아들)
- ② 2인(부부)
- ③ 2인(부부)
- ④ 3인(부부와 아들)
- ⑤ 부부(2인)
- ⑥ 2인(부부)
- ⑦ 2인(부부)

3)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연도

- ① 1975년
- ② 1970년
- ③ 2011년 귀향
- ④ 2000년
- ⑤ 1981년
- ⑥ 1952년
- ⑦ 1945년

2. 소득의 내용

1) 연간 농업 소득 금액 및 영농 규모(논/밭)

- ① 2천만원 / 4,500평(논) 1,000평(밭)
- ② 1천만원 / 4,000평(논)
- ③ 300만원 / 800평(논) 400평(밭)
- ④ 1,300만원 / 개 사육 농가
- ⑤ 1,000만원 / 5,000평(논) 300평(밭)
- ⑥ 1,200만원 / 3,800평(논) 1,500평(밭)

⑦ 1,400만원 / 4,000평(논) 1,000평(밭)

2) 연간 비농업 소득 금액 및 주요 수입원

- ① 무 ② 무 ③ 무 ④ 무 ⑤ 무 ⑥ 무 ⑦ 무

3) 정부지원금 및 기타 소득

- ① 150만원 ② 110만원 ③ 360만원 ④ 무 ⑤ 160만원 ⑥ 200만원 ⑦ 200만원

3. 지출의 내용

1) 연간 생활비

- ① 1,700만원 ② 6백만원 ③ 300만원 ④ 1,800만원 ⑤ 2,400만원 ⑥ 600만원 ⑦ 1,000만원

2) 연간 교육비

- ① 무 ② 무 ③ 무 ④ 무 ⑤ 무 ⑥ 무 ⑦ 무

3) 연간 의료비

- ① 150만원 ② 200만원 ③ 50만원 ④ 240만원 ⑤ 무 ⑥ 30만원 ⑦ 150만원

4) 연간 영농비

- ① 700만원 ② 400만원 ③ 100만원 ④ 1,200만원 ⑤ 500만원 ⑥ 400만원 ⑦ 250만원

4. 최근 5년 간 순소득 및 순자산 변동추이 분석

- ① 무 ② 무 ③ 무 ④ 감소 ⑤ 무 ⑥ 무 ⑦ 무

5. 정부의 각종 직불금에 대한 농가소득 기여도 조사

- ① 거의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무 ④ 무 ⑤ 거의 없음 ⑥ 거의 없음 ⑦ 거의 없음

6. 소득과 지출에 대한 만족도 분석

- ① 불만족. 마이너스 경제. 빚으로 산다.
- ② 죽지 못해 산다. 친구 만나리도 못간다, 돈이 없어서.
- ③ 적자 생활.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벌충.
- ④ 빚으로 적자를 메우는 실정.
- ⑤ 적자 생활.
- ⑥ 죽지 못해 산다. 연간 2천만원 빚.
- ⑦ 항상 쪼들리는 생활. 현재 빚이 4천만원. 빚 갚을 가망이 없다.

7. 개인당(가족구성원 모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금액은 매달 얼마였으면 하며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부

- ① 40만원. 좋겠다.
- ② 50만원. 노후가 편해질 듯.
- ③ 50만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 ④ 100만원
- ⑤ 50만원이면 그럭저럭 살 수 있지 않을까.
- ⑥ 50만원.
- ⑦ 50만원만 나오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8. 농가 유형

- ① 친환경농가(원주민)
- ② 일반농가(원주민)
- ③ 일반농가(귀향인)
- ④ 일반농가(귀향인)
- ⑤ 친환경농가(원주민)
- ⑥ 친환경농가(원주민)
- ⑦ 친환경농가(원주민)

II. 귀농/귀촌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7명

1. 기본 사항

1) 이름(나이/성별) 및 거주지

- ① 강00 49세 남
- ② 이00 41세 남

- ③ 죄00 39세 남
- ④ 이00 37세 남
- ⑤ 죄00 44세 남
- ⑥ 온00 54세 여
- ⑦ 장00 38세 여

2)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 ① 4인(부부와 두 아들)
- ② 5인(부부와 세 자녀)
- ③ 4인(부부와 남매)
- ④ 3인(부부와 아들)
- ⑤ 3인(부부와 딸)
- ⑥ 1인
- ⑦ 1인

3)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연도

- ① 2006년
- ② 2009년
- ③ 2008년
- ④ 2008년
- ⑤ 2011년
- ⑥ 2012년
- ⑦ 2012년

2. 소득의 내용

1) 연간 농업 소득 금액 및 영농 규모(논/밭)

- ① 2천만원 / 2,500평(논) 1,000평(밭)
- ② 800만원 / 9000평(논) 1,300평(밭)
- ③ 800만원 / 800평(논) 800평(밭)
- ④ 1,000만원 / 4,500평(논) 200평(밭)
- ⑤ 300만원 / 750평(논) 400평(밭)
- ⑥ 300만원 / 400평(밭)
- ⑦ 무 / 100평(밭)

2) 연간 비농업 소득 금액 및 주요 수입원

- ① 1,500만원(농업기술센터)
- ② 200만원(건축업)
- ③ 600만원(단체 간사)
- ④ 1,000만원(단체 간사)
- ⑤ 1,000만원(목공일과 일용·잡직)
- ⑥ 100만원
- ⑦ 600만원

3) 정부지원금 및 기타 소득

- ① 무
- ② 400만원(셋째 양육비)
- ③ 무
- ④ 무
- ⑤ 무
- ⑥ 무
- ⑦ 무

3. 지출의 내용

1) 연간 생활비

- ① 1,200만원 ② 1,350만원 ③ 1,300만원 ④ 1,200만원 ⑤ 800만원 ⑥ 250만원 ⑦ 600만원

2) 연간 교육비

- ① 무 ② 30만원 ③ 무 ④ 무 ⑤ 무 ⑥ 무 ⑦ 무

3) 연간 의료비

- ① 무 ② 20만원 ③ 100만원 ④ 무 ⑤ 100만원 ⑥ 무 ⑦ 무

4) 연간 영농비

- ① 1,000만원 ② 400만원 ③ 200만원 ④ 700만원 ⑤ 200만원 ⑥ 100만원 ⑦ 무

4. 최근 5년 간 순소득 및 순자산 변동추이 분석

- ① 무 ② 순소득은 조금 증가했으나 순자산은 외려 감소 ③ 무 ④ 무 ⑤ 순소득은 조금 증가했으나 순자산은 변동 무 ⑥ 무 ⑦ 무

5. 정부의 각종 직불금에 대한 농가소득 기여도 조사

- ① 거의 없음 ② 무 ③ 무 ④ 무 ⑤ 무 ⑥ 무 ⑦ 무

6. 소득과 지출에 대한 만족도 분석

- ① 소득이 좀더 늘면 좋겠다.
② 농사일은 어려운데 소득은 적고 기본적 생활비 지출로 적자 생계 지속.
③ 이대로 살기는 괜찮지만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 집을 짓거나 농지를 구입하거나 등등.
④ 나는 괜찮다고 여기지만 아내는 불만족.
⑤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다.
⑥ 만족.

⑦ 만족.

7. 개인당(가족 구성원 모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 금액은 매달 얼마였으면 하며 생활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여부

- ① 50만원. 확기적.
- ② 10만원. 시골에서는 월 10-20만원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됨.
- ③ 50만원. 큰 변화가 있을 듯.
- ④ 500만원. 완전 대박.
- ⑤ 30만원. 일용·잡식 안하고 보다 창의적인 일을 할 것.
- ⑥ 30만원. 확기적.
- ⑦ 30만원. 큰 변화.

8. 농가 유형

- ① 친환경농가(귀농인)
- ② 친환경농가(귀농인)
- ③ 친환경농가(귀농인)
- ④ 친환경농가(귀농인)
- ⑤ 친환경농가(귀농인)
- ⑥ 친환경농가(귀농인)
- ⑦ 귀촌인